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0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허영의원 대표발의(2206707)	1
----------------------------	---

Ⅰ. 제안경위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Ⅲ. 검토의견	3
---------------	---

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4 신설)	3
--	---

□ 허영의원 대표발의(220670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6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③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5(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자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 중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주차장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③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는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¹⁾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총면적이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이 존재함.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하게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1,500제곱미터 이상 기존 및 신축 옥외주차장에 대해 표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음²⁾.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2) 프랑스는 '23년 3월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법」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법률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출처: 주간 정부정책동향('23.2.6~2.10.),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의 주차공간 상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유사하게 주차장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제2200848호, 허영의원 대표발의 제2203333호,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3670호)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개정안과 유사 법률안 3건의 주요내용 >

유사 법률안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848호 (이용선의원안)	<u>주차대수 80대 초과 공영 노외주차장</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u>주차장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u>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u>정부가 필요한 지원</u> 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203333호 (허영의원안)	<u>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u>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u>주차대수 80대 초과 주차장</u> 설치자에게 주차장의 <u>50% 이상</u>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

유사 법률안		주요내용
		며, 민간 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u>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u> 할 수 있도록 함.
	제2203670호 (김소희의원안)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u> 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u>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u> 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도 개정안의 내용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인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주차장의 종류³⁾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나 지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주차장에 대해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부지별 차이점 고려, 주차공간 부족 우려에 따른 주차장 규모 기준 상향 필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의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참고1 참조).

셋째, 개정안은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지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차장과 관계없는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활성화에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차장법」 개정은 부적절함. 신재생에너지시설 활성화 관련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등 소관 법률을 통한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관계 기관 의견

□ 산업부 : 신중검토

- 개정안 내용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
- 유사한 내용(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부과)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인천시 : 신중검토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 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입지에 따라 지하식 등 그 형태가 다양하여, 주변 현황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규모(80대 이상)에 따른 설치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경기도 : 신중검토

-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한 교통안전 도모가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는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의 도모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 신재생에너지시설 활성화 관련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등 소관 법률을 통한 검토가 바람직
- * 신재생에너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누수, 하중 등 구조적 결함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안양시 : 신중검토

- 주차장 위치 등 현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 또한, 도심지 특성상 일조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효율 확보가 어려우며, 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주차면 축소 및 사업비 과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의무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

□ 강릉시 : 신중검토

-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할 우려가 높음

□ 대한건축사협회 : 신중검토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차장법」의 목적인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의 도모와는 무관
- * 기후변화 등 이슈 동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발전시설 설치로 건축물 이격·입면 등 설계에 제약 발생
- 전력저장 설비(ESS)의 화재위험성이 높아 화재 발생 우려

- * ESS 화재는 '23년 기준 약 5년간 1.7개월에 1번씩 발생(41건), 재산 피해액 914억
ESS 리튬이온배터리는 배터리 간격이 좁아 화재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 어려움

□ 한국주택협회 : 신중검토

-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화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민간 공동주택 주차장까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
- * 녹색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이미 신재생 설비 추가 설치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신재생 관련 규제를 조례로서 더욱 강화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등 업계 부담 가중
-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ZEB 5등급 수준 의무화 예정('25.6.30 시행)으로, 고층은 태양광 설치 면적이 부족하여 이미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 대한건설협회 : 수정필요(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 적용 제외)

- 수도권·광역시 제외 전국 지자체의 95%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평균 200m) 확보 규제 중이며
 -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국회예산정책처, '24.12.9)
-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격거리 확보 불가능
 - ☞ 주거지역 인접 주차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 발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대한 민간 부담으로 신규주차장 공급 급감 우려되며, 기존 주차장에 발전시설 설치 시 주차면수 감소 가능성
- 공영주차장 등에 시범적 설치·운용 후 민간주차장으로 확대 필요
- 부칙 경과조치 삭제 필요

□ 주택건설협회 : 수정필요(공동주택 적용 제외)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주택 건설 의무화 예정('25.6.30)으로,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필수로 요구(중복규제)
- 30세대 미만의 연립 등 비아파트에 기금이 지원되는 경우, 발전시설 설치 의무 부여 시 비아파트 공급 차질 우려

□ 국방부 : 수정필요

-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상당히 높아 레이더 차폐 등 군 작전에 제한사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국방부 사전협의 필요
- * (4항 신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부산시 : 수정필요

- 모든 공영주차장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령으로 지역여건, 구조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
 - 본문은 주차장, 부칙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대상을 규정하여 대상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노외주차장으로 설치 대상 통일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 고유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므로, 재량행위로 규정함이 타당

- * (1항 수정) 모든 공영주차장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재량
- 제2항은 민간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제1항의 설치 주체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설치 주체를 명확화
- * (2항 수정) 주차대수 80대 초과 주차장 → 제1항 이외의 80대 초과 노외주차장
- 부칙 제2조는 진정소급효를 발생시키는 규정이나, 진정소급효의 요건(96헌가2, '96.2)에 부합하지 아니함
-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